# <간이투자설명서>

신한SOL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Z445]



신한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일: 2024.03.07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 150 지수(PR: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전략수행에 따른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SOL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 150 지수(PR: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1) 주요 투자전략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발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PR: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Price Return :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

####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해당 비율만큼 모두 포함하는 완전복제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중 부도 가능성, 유동성 및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표본추출(Sampling)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탁계약서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증권의 대여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투자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유현금은 단기 우량 국채/통안채, 콜, 예금, 단기채권 ETF 등으로 운용합니다.

#### ※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 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지수 : 코스닥 150 지수(PR: Price Return)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기초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기초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종류	판매 수수 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신한 SOL 코스닥 150										
증권상장지	없음	0.150	0.001	-	0.1919	20	40	62	108	245
수투자신탁										
[주식]										

#### 투자비용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4)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추
이(연평균
수익률, 단
01 00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구분	최초설정일	2023.03.01 ~	2022.03.01 ~	2021.03.01 ~	2019.03.01 ~	설정일 이후
		2024.02.29	2024.02.29	2024.02.29	2024.02.29	
연평균수익률		22.71	-	-	-	34.07
비교지수	2023.01.30	22.68	-	-	-	33.02
수익률변동성		21.58	-	-	-	20.89

(주 1) 비교지수 : 코스닥 150 지수(PR: Price Return) \*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5)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신한 SOL 코스닥 1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2.29 현재)

			운용현황		동종집힙	운용경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운용		운용역		운용사		· 문용성 · 력년수
			기구 수	운용 규모	최근	최근	최근	최근	먹인구
			\ T	Η±	1년	2년	1년	2년	
치스이	1002	책임운용역	20711	29,956	15 260/	6.000/	C 270/	1 220/	8년
최승우	1983		39개	억원	15.26%	6.09%	6.37%	-1.32%	5개월
O청서	1000	부책임운용역	42711	7,694	14.000/	10 5 40/	C 270/	1 220/	5년
오형석	1989		12개	억원	14.99%	10.54%	6.37%	-1.32%	4개월

## 운용전문 인력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 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ETF 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 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

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서 산출·발표하는 코스닥150지수(PR: Price Return)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코스닥150지수(PR: Price Return)는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코스닥시장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종목이 선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 편입하는 개별종목의 경우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벤트 발생 등으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자위헌이 주요 내용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b>丁</b> 世	구시귀임의 구표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 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요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투자자산들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 보수, 지수사용료,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 (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코스닥시

				01.11=1			
			장에 상장된 종목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기업의 투명성, 신용상태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다 열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주식의 가격변동성이 높고 유동성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기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매입	. –		메ㅜ '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음. 이 경우 개인				
방법	(다면, 이 부자신력을 최소도 설정하기 위하여 모습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정확할 구 있음. 이 경우 개인 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						
0 =			매수, 설정 청구				
환매	개인투자자 :						
방법		-	매도, 환매 청구				
환매		0 -11	11-1 - 1 - 0 1				
수수료	없음						
114		다인		고.게시인 저날이 재	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산정방법				는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기준가격	2008		만 셋째자리에서 4시5입하(				
11417					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		
	공시장소		페이지 페이지				
	구분			과세으	니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십압두사기	구	십압투사기구 난계에서	는 별도의 소득고	l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십압두사기				사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sup>1</sup> 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병	받는 집합투자기구			
	십압투사기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E 소득세 포함) 세율로 (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	<sup>그</sup> 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E 소득세 포함) 세율로 (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	<sup>1</sup> 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변소득세 포함) 세율로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 액을 초과하는 금	<sup>1</sup> 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71.11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고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수익자	상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학원 초과하는 금 대표 기계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	으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합 TF)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변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물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sup>2</sup> 나 과세됩니다. 배	고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1	합 IF) 난과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	받는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됩니다.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나 과세됩니다. 배 시기 바랍니다. 단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긴	합 (F) 나과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학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가 과세됩니다. 배 시기 바랍니다. 단 로 하는 지수의 변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긴 세 적용	합 (F) 난과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역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역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나 과세됩니다. 배 시기 바랍니다. 단 로 하는 지수의 변 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습니다. 당습니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건 세 적용 ※ 상기 투자:	합 (FF) (보고) 소득0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신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 대한 과세내용 및 각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1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가 과세됩니다. 배 시기 바랍니다. 단 로 하는 지수의 변 나 적용되지 않습니 수 <mark>익자에 대한</mark>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1 의 보유기건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합 (FF) 한과 소득 0 한질 수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신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 대한 과세내용 및 각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1 액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 의 경우도 보유기 가 과세됩니다. 배 시기 바랍니다. 단 로 하는 지수의 변 나 적용되지 않습니 수 <mark>익자에 대한</mark>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10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긴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합 (F) 나과 소득0 산질 수 점의하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의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학생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의 경우도 보유기의 바랍니다. 태시기 바랍니다. 단로 하는 지수의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전의자에 대한 수익자는 투자신투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과세 집합투자 업자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긴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세전문가와 함 ※ 상기 과세(	합 (FF) 한과 소득 0 한질 수 점의하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역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역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대한 과세내용 및 각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 전투자선 내용은 투자 전용 기상으로 되었다.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학생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가 과세됩니다. 배시기 바랍니다. 단로 하는 지수의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익자에 대한 수익자는 투자신략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집합투자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간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세전문가와 합 ※ 상기 과세(	합 (주)(C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역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역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대한 과세내용 및 각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 전투자선 내용은 투자 전용 기상으로 되었다.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발생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의 경우도 보유기의 바라니다. 배시기 바랍니다. 단로 하는 지수의 탕사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명자는 투자신동 설명서를 참조하시다.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업자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간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세전문가와 합 ※ 상기 과세(	합 (주)(C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역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신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에 됐다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발생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를 가세됩니다. 배시기 바랍니다. 단로 하는 지수의 변수 역사는 투자신투 설명서를 참조하시 임단넷 홈페이지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 월 1 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 년 7 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다.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업자 모집(판매) 기간	수익자 상장지수집 투자기구(ET) 의 보유기긴 세 적용  ※ 상기 투자: 에 따라 달라 세전문가와 함 ※ 상기 과세( 신한자산운용  2023년 1월	합 (주)(C 25일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분소득세 포함) 세율로 연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역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1 일부터 배당소득세기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ETF)는 보유기간 과세기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에 됐다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에 됐다는 기원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됩니다. 발생을 초과하는 금 13 조의 시행(201의 경우도 보유기의 경우도 보유기의 바라니다. 배시기 바랍니다. 단로 하는 지수의 탕사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명자는 투자신동 설명서를 참조하시다.	교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이 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난,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니다.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	해당시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 [알림]

- "코스닥150지수(PR: Price Return)"는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에게 라이선스 이용이 허가된 한국거래소의 서비스표입니다." <면책사항>
- 1. 거래소는 개발되는 계약대상 지수 및 동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대상 지수 및 동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오기, 누락 또는 단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2. 거래소는 이용자,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구매자와 계약대상 지수 및 동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계약대상 지수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3. 거래소는 계약대상 지수 및 동 지수에 포함된 정보의 상품성 및 특정목적에 있어서의 정합성 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4. 거래소는 계약대상 지수 및 동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5.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당해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성 및 계약대상 지수의 시장 대표성(수익성)에 대한 어떠한 조언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합니다.
- 6. 거래소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이용자 신분 및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내용을 불문하고 거래소가 편집 및 산출하여 발표하는 계약대상지수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수연계 금융상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국한합 니다.
- 7. 거래소는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발행 및 판매의 시기선정 및 가격 또는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8.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경영, 마케팅 및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9. 본 조에 의한 거래소의 면책사항은 본 계약의 종료에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